

#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18.03.22., 개정 2019.03.19., 개정 2019.04.04., 개정 2019.12.23. 개정 2020.12.22.  
개정 2022.03.04. 개정 2022.04.12., 개정 2024.04.29.

## 제1조 (명칭)

이 위원회는 해전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라 한다.

## 제2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해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의 등록금 책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3조 (기능)<개정 2019.04.04.>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대학의 해당연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
3. 등록금회계 수입총액 10% 초과하는 건물, 구축물, 건설가계정 사항

## 제4조 (구성)

-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기획처장이 겸임하며, 각 구성단위의 위원회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1.11.1., 2019.03.19., 2022.03.04.>
  1. 교직원 - 4명(당연직 포함)
  2. 학 생 - 3명
  3. 외부전문가 - 1명
  4. 동문 또는 학부모 - 1명
- ③ 위원은 본교 총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업무관리를 위하여 기획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<개정 2019.03.19., 2022.03.04.>
- ④ 학생 위원은 재학 중인 자 중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<개정 2011.11.1., 2019.03.19., 2024.04.29>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 중 간사 1인을 둔다.

## 제5조 (임기)

-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(학년도 기준)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 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② 학생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개정 2011.11.1., 2020.12.22., 2022.04.12.>

제6조 (회의소집 및 의결)

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에 대한 주요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전원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<개정 2018.03.22.>

제7조 (회의록작성)

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,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, 중요사항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3.22.>

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참석자 서명을 하고 간서명은 회의에서 호선된 3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<신설 2019.12.23.>

제8조 (운영세칙)

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0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임기)

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부 칙(2011.10.13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례)

개정 당시 학생 위원의 임기는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
부 칙(2018.03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3.19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12.23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 시행전에 시행된 회의록 서명과 간서명은 제7조 제②항을 따른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0.12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1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4.29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